원화 국제화 로드맵

2026. 7.

관 계 기 관 합 동

목 차

Ⅰ. 원화 국제화의 의의 및 추진여건 ····· 1

[BOX1] 원화의 국제적 위상 평가 ····· 2

Ⅱ. 원화 국제화의 제약 요인 ····· 3

Ⅲ. 추진전략 ····· 4

1. 역외 원화거래 인프라 구축 및 외환제도 개선 ··· 5

2. 원화거래 수요 확충 ····· 10

3.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····· 14

4. 다층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····· 17

[BOX2] 원화 국제화의 기대효과 (사례) ····· 19

[참고] 원화 국제화 로드맵 주요 과제 추진일정 ····· 20

Ⅰ. 원화 국제화의 의의 및 추진여건

□ (**개념**) **원화 국제화**란 **외국인**들이 **역외**에서 **원화**를 **조달·활용**하는데 **제약**이 **없는 상태**를 의미

○ (**인프라·제도 측면**) **역외**에 **원화 거래·결제 시스템**이 **완비**되고, 원화 거래에 **제도상 제약**이 **없어야 함**

○ (**수요·공급 측면**) 경상·자본거래에서 **원화가 널리 활용**되고, **외국인**들이 **원화를 원활히 조달**할 수 있어야 함

□ (**필요성**) **우리 경제**의 **펀더멘털 고도화** 및 **자본시장 선진화** 등 감안시 **원화 국제화**의 **추진**은 **필수적**

○ 원화의 국제화가 충분히 성숙될 경우 **자본시장 발전**과 **기업**의 **거래비용 절감** 등 **긍정적 편익** 기대

- **외국인**의 **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**(수요)과 **국내금융기관**의 **다양한 연계상품 개발**(공급)로 **자본시장**의 **양적·질적 발전** 촉진
- 기업의 **자금조달** 및 **환전·환헤지 비용**이 **절감**되고, **환율 변동**의 **실물경제 영향 완화**

○ **외환시장 구조개선, WGBI 편입, MSCI 로드맵** 등 외환·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에 따라 **원화 국제화**의 **여건도 성숙**

□ (**고려사항**) 원화 국제화에 수반되는 **외환시장 외형 확대, 자본 유출입 규모·속도 확대**의 **영향**에 대해 **면밀히 대응** 필요

○ **외환시장의 폭과 깊이 확대**는 특정 수급 주체에 의한 외환시장 교란 가능성 감소 등 **시장 안정화**에 **기여 가능**

○ 다만, **우리 외환시장**과 **글로벌 금융시장간 연계 확대**로 **글로벌 충격**의 **전파속도가 빨라지고, 변동성 확대 가능성**도 제기

☞ 우리 경제의 고도화 수준에 부합하는 **원화 국제화를 추진**하되, **리스크 관리**까지 **균형**있게 **고려**한 **'원화 국제화 로드맵'** 마련

(Box1) 원화의 국제적 위상 평가

□ **원화의 국제적 활용도**는 **GDP 기준 한국경제 규모**와 **유사한 수준**

○ **외환거래량 기준**(BIS, '25.12)으로 **원화**는 세계 **12위**(약 1.8%)로서, '25년 우리나라 GDP 순위(13위, 1.6%)와도 대체로 **부합**

○ **전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보유통화** 기준(IMF)으로도 **원화는 8위권으로 추정***

* IMF Working paper(2022) "The Stealth Erosion of Dollar Dominance"에서 보조통계(CPIS/SEFER)를 활용하여 기타 통화 비중에 대해 추정

※ **SWIFT 결제통화** 기준으로 원화 위상이 **낮다는 일부 평가**도 있으나, SWIFT 통계는 자국내 결제까지 SWIFT 망을 사용하는 EU·英·캐·호주·홍콩·싱가폴 등 대비 **자국내 결제는 자체망**을 쓰는 **韓(BOK-Wire)·中·日** 등의 순위를 **낮게 평가**하는 경향*

* SWIFT 결제통화 통계에서 원화는 상위 20위권 밖(0.3% 이하)으로 평가

글로벌 외환시장 거래량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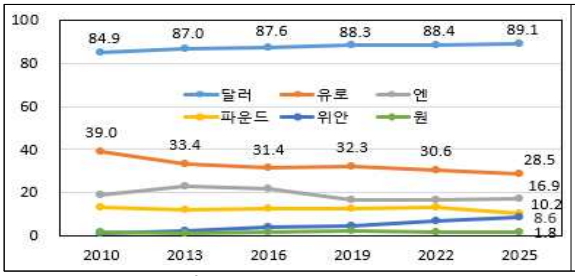

* 출처: BIS (합산 200% 기준)

글로벌 SWIFT 결제 통화별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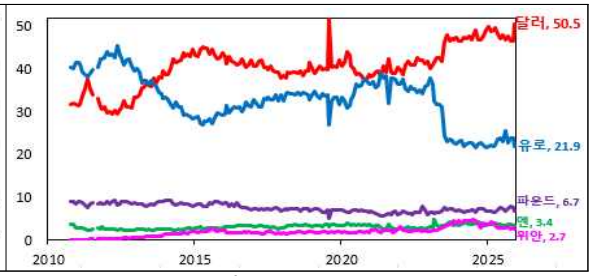

* 출처: SWIFT (합산 100% 기준)

□ **원화**의 **국제적 통용성**과 **태환성**은 주요통화 대비 **아직 미흡한 수준**

○ 다만, 외국인 투자자 등은 **세계 2위** 규모의 **원화 차액결제 선물환(NDF) 시장**을 통해 환헤지 및 차익실현 거래를 효율적 수행 가능

○ 한은의 **프로젝트 아고라*** **정식참여**로, 블록체인 기반 **디지털 국제결제 시대**에 **우리 통화의 위상제고** 계기 마련 평가

* BIS 주도로 8개 중앙은행(美·EU·日·英·스위스·韓·멕시코·캐나다)과 민간은행이 참여해 기존의 느리고 비싼 국경간 결제를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개선하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

Ⅱ. 원화 국제화의 제약 요인

1 **(제도적 제약)** 외국인들이 **역외**에서 **원화**를 **자유롭게 조달·결제**할 **인프라**가 **부재**하고, **자본거래 사전신고** 등 **제도상 제약** 존재

○ 그동안 **외환시장 운영시간**이 **글로벌 영업시간 전체**를 **포괄하지 못함** (7.6일자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)

○ 외국인의 **원화 결제**를 위해서는 **국내 외국환은행**에 **계좌 개설 필요**

○ 외국인의 **역외 원화 자본거래**를 위해서는 **사전신고 필요**

2 **(현실적 제약)** **국제금융중심지**와의 **시차**, **발달된 NDF 시장**의 **존재**, **달러화 중심 국제무역거래** 등 현실적 여건이 **원화 활용도 제약**

○ 뉴욕, 런던 등 **국제금융중심지**와 **한국간 시차**로 인해, 금융중심지의 **현지 낮시간대**(한국 밤시간) **원화거래 활성화**에 **제약***

* 美 달러화를 제외한 모든 통화는 현지 밤시간에 외환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

○ 역외에 **유동성이 풍부**한 **NDF 시장**이 **이미 존재***

* 원화 실물의 조달은 불가능하나, 현지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환헤지·차익실현 거래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 역외원화거래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

○ **달러화 중심**의 **강한 네트워크 효과**와 **경로 의존성**이 존재하며, **경상거래**에서 **원화**의 **수요 저조***

* 최근 원화자산에 대한 관심 증대로 자본거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, 경상거래는 달러 결제관행 등으로 원화 수요 저조

Ⅲ. 추진전략

목 표

원화를 규제통화에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
(Restricted Currency → Freely Convertible Currency)

전 략

- ✓ 원화를 시간·장소의 제약없이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, 인프라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
- ✓ 원화 자본·경상거래 수요확충 및 원화 유동성 공급확대
- ✓ 원화 국제화 진전에 대응하는 다층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

핵심 추진 과제

1 (인프라·제도) 역외 원화거래 인프라 구축 및 외환제도 개선

① 외환시장 24시간 개장
② 역외원화결제시스템 구축
③ 외환거래 규제 완화
④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결제 인프라 마련

2 (수요) 원화거래 수요 확충

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 제고
② 원화 자산 활용도 제고
③ 원화 경상거래 인센티브 확대
④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 확대

3 (공급)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

① 야간 역외 유동성 공급체계 구축
② 증권결제 원화 유동성 개선
③ 커스터디은행 역량 강화
④ 원화 무역금융 확대

4 (리스크) 다층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

① 대외안전판 확충
② 외환시장 안정화정책 고도화
③ 외환건전성 관리체계 재설계
④ 거시경제정책간 유기적 연계

추진방식

원화거래 편의 제고와 리스크 관리를 균형있게 추진

1 역외 원화거래 인프라 구축 및 외환제도 개선

◈ **24시간 거래, 역외원화결제시스템 구축 등 외국인이 시간·장소의 제약없이 원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고, 외환거래 전반의 제도와 관행 개선**

1 외환시장 24시간 개장

❖ **외환시장 운영시간이 런던, 뉴욕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영업시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장**

○ **(외환시장 24시간 운영)** 은행간시장 현물환 및 FX 스왑 **운영시간**을 (기존)**새벽 2시 종료** → (변경)**24시간 운영**

- **주말 및 1.1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**에 중개 플랫폼 운영 + **월요일 06시~토요일 06시**(美 서머타임 기간*)까지 **無중단 운영**

* 미국 윈터타임(11월2주~3월2주) 기간에는 월요일 07시~토요일 07시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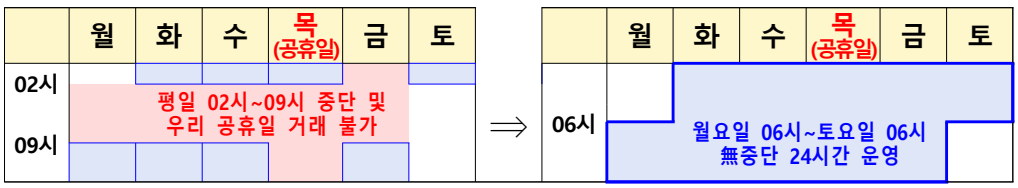

○ **(업무관행 개선)** 국내은행의 **야간시간대 원활한 거래참여**를 위해 **관련 제도** 및 **업무관행**을 **재정립**

- 회계·과세·거래 등의 기준이 되는 **매매기준율 산정방식**을 **글로벌 기준**으로 변경(현행 MAR → 개선 TWAP)*

* MAR(Market Average Rate) : 09시~15시30분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가중 평균

TWAP(Time Weighted Average Price) : 16시 전후 2분30초(총 5분) 동안 이뤄진 거래 중 일부를 추출하여 평균 <글로벌 통화도 벤치마크 환율을 짧은 window로 산정>

- **거래 안정성 담보**를 위해 **'27.1월부터 적용**

- **야간에 별도의 전문인력 없이 자동 거래**가 **가능**하도록 **eFX**(전자거래) **가이드라인**을 **마련**('26.8월)

○ **(WMR 편입추진)** **해외 투자자**들이 **보유자산 장부 평가**에 **주로 사용**하는 **글로벌 벤치마크 환율**(WMR*) **편입** 추진

* World Market Refinitiv rate : LSEG가 산출·제공하는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로서, 글로벌 투자자들은 런던 16시 기준 WMR을 가장 많이 사용하나 현재 원화는 未포함

2 역외원화결제시스템 구축

❖ **역외 원화거래 자유화, 한국은행 역외원화결제망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**

○ **(역외 원화거래 자유화)** 「역외원화결제기관*」을 이용하는 **외국인간 원화거래**를 **제한없이 허용**

* 해외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으로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원화 업무(예금·대출·송금 등)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재경부에 사전 등록한 기관

▪ **외국인**은 **국내 계좌 개설**의 **번거로움 없이, 해외**에 **소재**한 **「역외원화결제기관」** 내 **본인 원화계좌**를 이용하여 **원화거래 가능**

▪ **「역외원화결제기관」**을 통한 **외국인간 원화거래**에 대해서는 **외환법령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*, 은행 확인의무 완화**

* 외국인간 원화 경상거래는 현재도 사전신고 면제

<역외원화결제기관 이용시 외환규제 완화 범위>

	현행	개선
자본거래 사전신고	• **은행·한은·재경부 신고 원칙**	• **면제**(단, 외국인간 국내 부동산거래 제외)
은행의 확인의무	• 고객이 요청한 원화 거래의 **원인행위**(예: 수출입, 부동산매매) 등을 **사전 확인**하고 자금 이체	• **계좌 정보 등 최소한만 확인** ※ 실시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제도 실행 과정에서 구체적 범위 확정

※ 「**역외원화결제기관**」을 **이용하지 않는 외국인의 원화거래**는 **자본거래 사전신고, 은행의 확인의무** 등 **기존과 동일하게 외국환법령상 절차**를 적용

※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한 외국인 등의 원화거래 예시

❶ **(예치·보유) 美 자산운용사 A**는 **韓 채권 투자자금 운용**을 위해 **뉴욕**에 **소재**한 **글로벌 은행**에 **본인 명의 원화 계좌**를 **개설**하고, **韓 채권운용 자금**을 **예치·보유**

❷ **(지급·결제) 獨 자동차 부품회사 B**는 **韓 협력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**하고, **자국 내 은행**에 **보유** 중인 **원화**로 **물품대금**을 **지급·결제**

❸ **(조달·운용) 英 글로벌 은행 C**는 지급·결제에 필요한 원화를 **다른 해외 금융기관**으로부터 **차입**하여 **조달**하고, **보유 원화**를 **다른 외국 금융기관**에 **단기 대여**로 **운용**

❹ **(이체·송금) 日 직장인 D는 韓 여행 후 남은 원화**를 **도쿄 소재 은행**의 **본인 계좌**에 **보관**하다가, **향후 韓 여행 예정**인 **자녀**의 **원화 계좌**로 **이체·송금**

○ **(결제망 구축)** 외국인간 원화 거래의 최종 결제*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「역외원화결제망」(가칭) 신규 구축

* 최종 결제는 금융기관을 통한 원화 거래가 한국은행 결제망에서 최종 확정되는 행위

▪ 24시간 운영되는 「역외원화결제망」을 통해 외국인은 야간 시간대에도 시차 없이 원화자금 결제 가능

※ 「역외원화결제망」의 구조 및 운영체계

▪ 「역외원화결제기관」은 외국인 고객을 대표하여 국내은행(한국은행 역외원화 결제망에 직접 참가한 은행에 한해) 내 해당기관 명의의 원화 통합계좌 개설

▪ 외국인 고객의 요청으로 원화 자금 결제시 「역외원화결제기관」이 국내은행에 개설한 원화 통합계좌를 거쳐 한국은행 역외원화결제망에서 최종 결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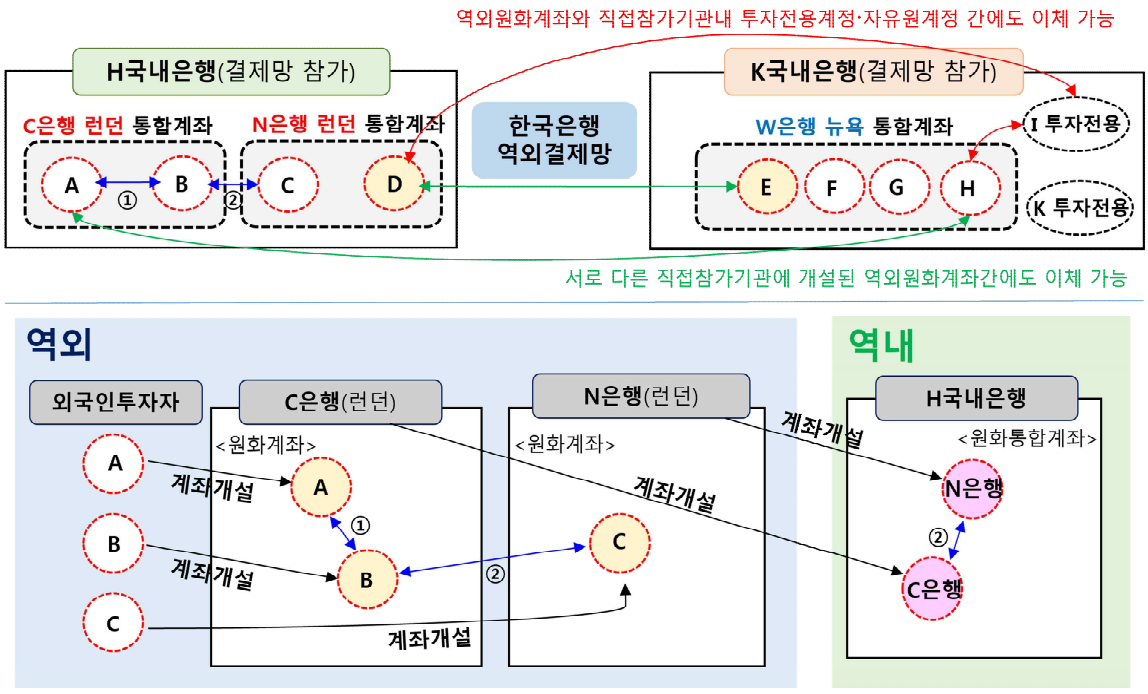

○ **(제도 보완)**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인력 운용 어려움을 고려하여 야간시간대 환거래·결제업무 수행 지원방안 검토

○ **(실물인도(DF)거래 활성화)** NDF 거래를 점차 DF 거래로 전환할 수 있도록, 외국환은행의 DF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방안* 마련('26.9월)

* (예) 선물환포지션, 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시 NDF보다 DF 거래를 우대 적용

3 외환거래 규제 완화

❖ **외국인 대상 원화자금 대출 등 자본거래시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하고, 외국환은행의 확인절차 간소화 등 원화거래 관련 규제 대폭 완화**

○ **(사전신고 규제완화) 외국환거래법령상 자본거래* 사전신고 기준 금액을 2배 이상 대폭 상향**

▪ **업권 수요, 개정 연혁, 규제완화 필요성**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('26.9월)하고 **연내 규정 개정** 추진

<외국환거래법령 사전신고 규제 완화(안)>

주체	상대방	내용	현행	개선(안)
외국환은행	비거주자	외화자금차입	▸미화 5천만불 & 상환기간 1년 초과 재경부 신고	신고기준 금액 2배 이상 상향 등
		원화자금대출	▸동일인 10억원~300억원 은행 신고 300억원 초과 한은 신고	
거주자	비거주자	원화자금차입	▸1년 누적 10억원 초과 재경부 신고 10억원 이내 은행 신고	
국내기업, 외투기업	현지법인, 외국본사	자금통합관리	▸미화 5천만불 한도	
거주자*/ 비거주자	거주자/ 비거주자	원화증권발행	▸재경부 신고**	일정금액 이하 사후보고 전환

* 거주자가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
** 5천만불 이내에서 비거주자의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은 사후보고로 旣전환('26.3월)

○ **(금융기관 규제완화) 역외계정 운용 편의 제고, 외국 금융회사 명의 제3자 외환거래 허용** 등 **합리적으로 제도 개선**

▪ 외국환은행의 **자금 운용 편의**를 위해 역내계정에서 **역외계정**으로 **이체할 수 있는 자율한도**(역외외화자산평잔의 10%) **상향** 검토

▪ 제3자 외환거래에서 **외국 금융회사**(자산운용사 등)가 **외환매매 거래**의 **당사자**가 될 수 있도록 **규정 개정** 추진

* (현행) 제3자 외환거래에서 외국환은행은 **개별 펀드 단위**로 실명 확인
→ (개선) 실질적 거래당사자를 고려하여 **외국 금융회사 단위**로도 실명 확인

○ **(계정통합·간소화) 복잡한 원화계정 구조*** 및 **계정별 예치·처분 사유**를 **통합·간소화**하여 **외국인**의 **원화사용 편의** 제고

* (현행) 투자전용원화계정(증권투자), 자유원계정(대외지급), 비거주자원화계정(국내 사용) 등

○ **(사후보고 전환 검토) 현행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**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, **사후보고 중심 체계**로 **단계적 전환** 검토

▪ **대규모 자본유출입** 등 **외환시장 모니터링 체계**를 **유지**하면서도, **외환당국**의 **사전인지 필요성**이 **높지 않은 자본거래*** 위주로 점검

* (예시) 외국환은행의 외화·원화자금 대차거래 등

4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결제 인프라 마련

❖ **원화표시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제도화하고, CBDC 등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국제결제 시대의 주도권 선점**

○ **(스테이블코인 제도화) 원화 스테이블 코인**(SC)의 **발행·유통·거래 근거**를 마련하고, **국경간 유출입**에 대해서도 제도화

▪ 「**디지털자산기본법**」 **제정**에 맞추어 「**외국환거래법**」 등 **개정 추진**('27년)

○ **(국채 토큰화) 한은 기관용 CBDC**와 연계한 **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** 추진('27년)

○ **(디지털 국제결제)** 블록체인·CBDC 기반으로 **디지털 국경간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**하는 **프로젝트 아고라***에 **정식멤버로 참여**

* BIS 주도로 8개 중앙은행(美·EU·日·英·스위스·韓·멕시코·캐나다)과 민간은행이 참여, 기존의 느리고 비싼 국경간 결제를 디지털 화폐를 활용해 개선하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

▪ 표준체계 구축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**블록체인 기반 기관용 CBDC*** 및 **예금 토큰 인프라**인 **프로젝트 한강**** 추진 경험 등 공유

*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되, 은행 간 정산은 한은이 발행하는 기관용 CBDC를 사용하는 방식

** '25.6월 1단계 실거래 테스트를 완료하고 2단계 테스트를 추진중에 있으며,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도 진행중

▪ **아고라 상용화** 과정에서 **국내 금융기관**의 **적정 사업기회 발굴**

2 원화거래 수요 확충

◈ 외국인의 **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** 및 **원화 경상거래 인센티브 제고**를 통해 **원화거래 수요 확대**

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 제고

❖ **MSCI 로드맵의 자본분야 과제(25개) 중 완료과제(22개)들은 제도정착 및 외국인 투자자의 체감도 제고 + 잔여과제(3개) 차질없이 이행**

○ **(완료과제(22개))** 제도개선이 완료되었음에도 **외국인 투자자 체감도**가 **낮은 과제**들의 **실제 활용상 애로** 여부 지속 **점검·보완***

* (예) 최종투자자별 결제계좌 운영·관리→ 글로벌수탁은행(GC) 명의의 통합관리계좌(옴니버스 계좌) 체계로 전환

▪ **'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'*** **운영**('26.7월~) 등 **외국인 투자자와 정례 소통**을 **강화**하여 시장 접근성에 대한 **의견수렴·피드백** 확대

*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·투자은행 등 참여 추진

▪ 관계기관 참여 **MSCI TF 개최, 외국인 투자자 면담** 등을 지속하면서 **운영상 병목요인 점검, 규정상 불분명한*** **부분 해소**

* (예) 외국인 투자자 면담 시, 국내 수탁은행별로 신규 제도 이행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의견 → 금융기관 대상 가이드라인·FAQ 배포 등 안내 강화

○ **(잔여과제(3개))** **❶증권거래·결제 자동화 인프라 구축, ❷투자자 등록 개선, ❸영문공시 확대** 등은 일정에 따라 **차질없이 추진**

▪ 예탁원 결제시스템의 **국제 표준 시스템**(예: CTM·ALERT*) **연계**를 통해 **거래·결제 프로세스 자동화** 및 **효율성·정확도** 제고('27년)

* 글로벌 투자자간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'거래·결제 표준 정보공유 시스템'

** (현재) FAX·이메일 등을 통해 투자자별 매매내역 수기 확인(투자자-증권사), 결제지시서 직접 입력·전달(보관기관) → (개선) 매매~결제까지 필요한 정보 자동전달

▪ 기존 계좌 폐지 또는 신규 개설 없이 **투자자 식별번호를 IRC → LEI·여권번호로 전환**할 수 있도록 **금융기관 인프라 정비**('26.下)

▪ **코스피 全 상장사**(現 자산 2조원 ↑)로 **영문공시 의무화 확대**('27.3월)

2 원화 자산 활용도 제고

❖ **외국인이 보유한 원화 채권의 활용도를 제고하고, 투자가능한 원화 자산의 범위를 다변화하여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유인 확대**

○ **(국채 등 활용도 제고)** 국채·통안채 등의 **역내 담보활용 제고, 역외 대차거래 허용** 등 **활용도 확대** 방안 검토

- **담보목적 대차거래*** **활성화**를 위한 **영문 가이드라인**을 **배포**('26.8월)하고, **활용범위 확대 방안** 검토

* 채무이행, 파생상품 거래 등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증권을 대여하고, 담보목적이 종료되면 동일한 종류·수량의 증권을 반환받는 증권대차거래

- 외국인의 국채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**국제예탁결제기구**(ICSD)* **내**에서 **외국인간 국채·통안채 대차거래 허용**** 등 **활용범위 확대**

* 국제예탁결제기구(ICSD): 국경간 증권 보관·결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유로클리어, 클리어스트림이 대표적

** (현행) 매매·담보·RP → (변경) 매매·담보·RP·대차로 확대

○ **(단기상품 운용제약 해소)** 비거주자가 **일시적으로 보유한 원화**를 **단기상품에 운용**할 수 있도록 **제도 정비***

* 외국환거래규정상 투자전용원화계정의 예치·처분사유에 단기 금융상품 명시 등

○ **(해외 공공부문 투자 원활화)** 외국중앙은행, 국제금융기구, 외국정부 등 **해외 공공부문**의 **국내 채권투자 원활화** 지원

- 외국중앙은행, 국제금융기구 등의 **기관간 RP 시장 참여 허용**

- **외국중앙은행 등**에 대한 **한국은행**의 **상임대리인 업무범위***를 **채권 전반**으로 **확대**하는 방안 검토

*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국고채, 재정증권, 통안채, 외평채로 제한

3 원화 경상거래 인센티브 확대

❖ **국내 기업이 무역대금 결제 등에 원화 활용시 금리 우대, 무역보험 한도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원화 경상거래 유인 제고**

○ **(무역금융 우대)** 무역거래 원화 결제건에 대한 **정책금융 금리 우대, 무역보험 우대** 등 검토

- (금리우대) **원화 인보이스·결제건** 대상 **수출금융 금리 인하, 원화매출 채권**에 대한 **할인율 우대** 등 검토
- (무역보험 우대) **원화 표시 거래**에 대한 **무역보험 한도우대** 등 **인센티브** 검토

○ **(정책지원 연계) 수출지원사업** 등 **정부예산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시** 원화결제 실적, 확대계획 등을 **우대요소로 반영** 추진

4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 확대

❖ **현지통화 직거래 체계(LCT) 등 활성화를 통해 경상거래시 환전 비용 등을 절감하고, 국경간 송금·결제 편의 제고**

○ **(LCT 확대)** 주요 교역국 등과 **자국 통화**로 **수출입대금**을 **지급**하는 **현지통화 직거래 체계**(LCT*) **구축** 추진(예시: 인도네시아 사례**)

* Local Currency Transaction: 양국이 지정한 은행에 대해 무역결제·송금·대출 등 특례 부여 → 지정은행을 통해 수출입 기업 등이 달러 환전없이 상대국 통화로 결제

** '24.9월 한-인니 직거래 체계 출범 → '24.9~'26.5월간 약 0.6조원 결제

- 한국과의 **교역규모, 산업구조, 취업 체류** 등 요인으로 **잠재적 직거래 수요**가 큰 국가로 확대 고려
- 원화-현지 직거래 통화의 **선물환 등 외환거래 활성화**를 위해 외국은행 거래 참여 독려 등 **금융외교 노력** 강화

<현지통화 직거래 체계(LCT) 도입 전후 비교(예: 인도네시아(IDR(루피아) 사용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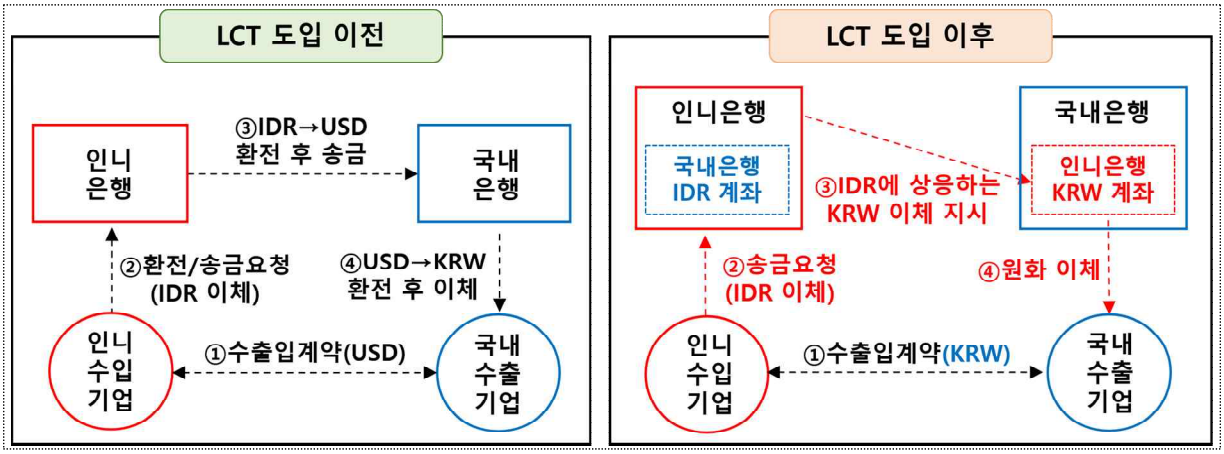

○ **(현지 QR 결제 활성화) 해외에서의 원화결제 편의 제고**를 위해 주요 관광국 등과 **'국가간 QR 결제연동'*** 추진 확대**

* 양국 국민이 상대국 방문시 달러 환전 없이(양국 통화 직거래) 국내에서 사용하던 모바일 결제 앱으로 즉시 결제(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대비 2%p 비용 절감)

** 인도네시아 서비스 출시('26.4.1일), 인도 MOU 체결(4.20일), 베트남 본계약 체결(4.23일), 싱가폴·태국 등 다양한 국가와 QR 결제연동 확대

○ **(다자 네트워크) 아시아내 소액 원화결제 기반 마련**을 위한 **다자간 지급결제 네트워크**(예: Project Nexus*) **참여 검토**

* 국가간 신속지급결제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'27년 실가동 목표로 준비중(싱가폴·인도·태국·말련·필리핀·인니 참여 + 유럽(ECB) 검토중)

<Nexus 플랫폼을 활용한 소액 결제 흐름(예시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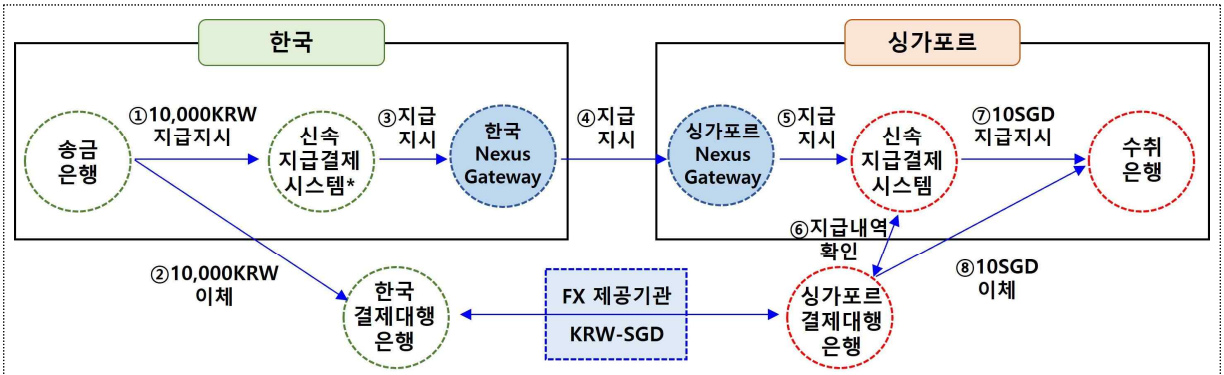

* 각국에서 개인간 송금, 상거래대금결제 등에 활용중인 소액결제인프라 의미(韓 전자금융공동망)

※ Nexus Gateway를 통해 다수의 신속지급시스템을 연결
→ 시스템 연계 소요 시간(1분 이내)·비용 절감 및 국가간 송금 효율 극대화

3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

◈ **역외원화결제시스템 내 유동성 공급체계를 구축하고, 증권·무역 거래 등 원화 유동성 개선방안 마련**

1 야간 역외 유동성 공급체계 구축

❖ **야간 역외 결제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여 [1단계]민간 유동성 공급 기관, [2단계]정부·한국은행을 통한 유동성 백스톱 구축**

○ **(1단계: 민간 유동성) 외국환은행**이 역외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**외국 금융기관**에게 **원화 유동성**을 **원활히 제공**할 수 있도록 **제도화**

- 외국 금융기관이 **일시차입**(Overdraft)을 통해 **결제** 등에 필요한 **원화**를 **외국환은행**으로부터 **제한없이 조달**할 수 있도록 **규정 마련**

○ **(2단계: 공공 백스톱) 야간 시간** 역외 결제망 내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**한국은행**의 **추가 유동성 제공 여부**를 **검토**

- 한은 역외원화결제망 시스템 고도화 전까지 **정부**(외평기금)에서 **유동성을 공급**하는 방안도 **검토**

2 증권결제 원화 유동성 개선

❖ **외국계 금융기관의 원활한 원화 증권 결제를 위해 차입제한 완화 등 방안 마련**

○ **(결제촉진대금)** 국제기준에 맞춰 **담보관리체계 개선, 납부 예상치 사전제공** 등 결제촉진대금 관련 **부담완화** 방안 마련

○ **(차입제한 완화) 외국계 금융기관**이 **본사** 등으로부터 **유동성**을 **원활히 확보**할 수 있도록 **차입 규제**를 **완화**

- **업권 수요**와 **리스크 요인**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방안 마련('26.9월)

<외국계 금융기관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차입 규제 완화(안)>

주체	현행	개선(안)
외국환 은행	▸별도 규정 없음 * 일반 거주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	▸별도 규정 신설 * 외국환은행의 원화차입 한도를 별도 구분하여 추가 확대
외국계 증권사 국내법인	▸1년 누적 10억원 초과 재경부 신고, 10억원 이내 은행 신고 * 일반 거주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	▸기준금액 상향 * 일반 거주자 대상 공통기준 상향
외국계 증권사 국내지점	▸차입 제한	▸차입 허용 * 일반 거주자 대상 공통기준 적용

○ **(기타) 국내은행의 결제 유동성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본부담 산정기준에 대한 안내·해석 명확화***

* (예) 국내은행이 외국계 금융기관에 일중당좌대출시, 대출 계약구조별 위험가중자산 산정방식(RWA)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금감원 유권해석 제공

3 커스터디은행 역량 강화

❖ **국내 외국환은행의 커스터디업 참여 확대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원화 유동성 제공 서비스 활성화**

○ **(커스터디업 제도화)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 업무범위에 커스터디업***을 신설**

* (예) 비거주자의 원화 또는 외화표시 금융자산의 보관, 결제, 담보관리, 세금납부 및 관련 외국환거래 수행

※ (신탁업) 자산을 신탁은행 명의로 이전받아 투자·관리
(커스터디업)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있는 상태로 결제·보관·환전 등 관리

○ **(지원체계 마련)** 국내 외국환은행의 커스터디업 참여 유도를 위해 **커스터디 선도은행 지정*** 및 **인센티브**** 방안 검토

* 외국인 국내투자 수탁실적, 원화 유동성 공급능력, 별도 전담 조직 운영 등 고려

** (예) 외국 중앙은행 등의 국내투자시 한은은 수탁업무 서비스 제공 중 → 이에 수반되는 환전·여유자금 운용 등 업무를 커스터디 선도은행에 전담 위탁

○ **(파트너십 구축 지원)** 정부·한은 등과 **공동 로드쇼, 글로벌 수탁은행과 제휴**지원 등 신규 참여기관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기회 제공

▪ **한국투자공사**(KIC), **한은 등**의 **해외투자 수탁기관 선정**시 신규 참여기관과의 협업실적 등을 **가점요인**에 반영

4 원화 무역금융 확대

❖ **통화스왑 자금의 무역금융 확대, 해외정부 구매계약시 수출금융 제공 등 경상거래 관련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**

○ **(통화스왑 활용) 한-중 통화스왑 자금**을 활용한 **무역금융** 제공 사례와 유사한 시스템을 **다른 국가로 확산***

* (예시) ❶한은이 스왑라인을 통해 상대국 중앙은행에 원화 공급
→ ❷상대국 중앙은행은 자국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원화 대출
→ ❸한국 수출자에게 원화로 대금 지급

○ **(정부계약 연계) 방산·원전** 등 **해외정부와 체결**하는 **구매계약**에서 **원화 계약**시 **수출금융 인센티브**를 **제공**하는 방안 검토*

* 수입국 정부가 수은 등 韓 금융기관과 수출계약금액의 일정 비중 이상을 원화 표시결제 계약시 금리우대 등 제공

○ **(전대금융* 활용)** 수은이 **현지은행**에 전대금융 제공시 달러(기존) 외에 **원화**로도 **신용한도**를 **부여**하도록 유도

* 수은이 외국은행에 신용공여한도를 설정 → 외국 현지은행은 수은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 한국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기업에 대출

▪ **현지 기업**이 한국 제품 수입분을 **원화로 대출받는 경우 금리우대** 등 **인센티브 제공** 검토

4 다층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

◈ **원화 국제화 이후 여건 변화에 맞추어 대외안전판 확충, 외환정책 고도화, 정책수단간 연계 운용 등을 통해 리스크를 다층적 관리**

1 대외안전판 확충

❖ **원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국제화 수준에 상응하는 대외안전판을 선제적으로 확충**

○ **(시장안정 여력 확충)** 시장 중립적 방식으로 **외환시장 안정 여력 점진적 확충**

○ **(제2의 외환보유액 확충)** 공공부문의 **외화자산**이 **유사시 외화 유동성 공급수단**으로 **역할**을 **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**

○ **(금융안전망 강화)** 국가간 **양자간·다자간*** **통화스왑 강화**

* ASEAN+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(CMIM) 실효성 제고 등

○ **(대외신인도 유지) 원화 국제화**에 부합하는 **경제 펀더멘털 확보** 및 **국제사회**와의 **소통 강화** 등을 통한 **대외신인도 유지**

2 외환시장 안정화정책 고도화

❖ **정책연계를 통한 예방적 대응 기반 강화 및 외환시장 모니터링·대응체계 고도화**

○ **(예방적 대응) 외환시장**의 **외형**과 **변동성 확대**에 맞추어, **정책 연계 강화** 등을 통한 **시장의 복원력 제고**

○ **(시장대응)** 원화 국제화에 맞추어 우리 **외환시장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고도화**

- **야간 모니터링 데스크**(재경부·한은)를 중심으로 **야간 시간대 가격 급변동, 호가 스프레드, 거래량, 환율 괴리** 등 실시간 점검
- **역외원화결제망 참가기관**과 **실시간 소통**하며,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**대응수단**을 **탄력적으로 조합**

3 외환건전성 관리체계 재설계

❖ **모니터링, 시스템리스크 관리, 위기대응체계 전반에 걸쳐 역외 원화시장을 고려한 외환건전성 관리체계로 단계적 전환**

※ 다만, **초기 역외 원화시장 활성화를 저해**하지 않도록 **탄력적으로 추진**

○ (**모니터링 강화**) 역외 원화시장의 유동성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**모니터링 지표 신설**

▪ **국내 금융기관**을 통해 개별 「역외원화결제기관」의 **가용 원화 유동성, 조달가능 규모, 원화표시 자산/부채 비율** 등 점검

○ (**시스템리스크 관리**) 역외 원화시장 유동성, 「역외원화결제기관」 개별 위험으로부터 **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 보호 체계 구축**

▪ **국내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비율, 스트레스 테스트** 등에서 **역외 원화시장 상황*** 등을 **포함**하여 검토

* (예) 역외 원화시장의 유동성 부족이 국내 자금시장의 조달 금리 상승 등 전이

○ (**위기대응체계 구축**) 유사시에는 **역외 원화시장의 유동성 문제**가 **국내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정적 시장관리 체계 구축**

4 거시경제정책간 유기적 연계

❖ **글로벌 금융시장 영향 확대를 감안, 성장·물가·환율·대외균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거시경제정책간 유기적 연계 운용**

○ (**기본방향**) 원화 국제화에 따른 **글로벌 금융시장의 국내영향 확대***를 감안하여 거시경제정책간 **유기적 대응체계 강화**

* (재정) 외국인의 국채 등 보유 확대로 국채수급·금리 등 재정경로와 연계 강화
(통화) 역외 원화 유동성 영향으로 통화정책의 대외 파급 및 환류 확대
(금융감독) 비거주자 원화거래·역외 익스포저 확대로 감독 범위 확장
(거시건전성) 역외 원화유동성 일시 매각 등을 통한 리스크 확대 가능성

○ (**정책조합**) 정책 수단별 **역할 분담**과 **관계기관간 정보공유·공동대응** 등 협업을 통해 **정책 효과성 강화***

* 자본 유출·입, 대내·외 충격에 따른 통화·재정·건전성규제·외환정책 역할 정립

(Box2) 원화 국제화의 기대효과 (사례)

1 개인 : 해외여행 · 투자시 환전비용 절감 · 환전편의 제고

현재	① (여행) 해외 여행에 앞서 현지통화 환전을 위해 은행을 방문해야하며, 신용카드 결제시 결제수수료 부담 필요 ② (해외투자) 야간시간에 美 주식 투자과정에서, 시장환율보다 높은 假환율로 환전하므로 계획만큼 미국 주식을 매수하지 못함
개선	① (여행) 해외 여행시 금융앱의 QR 코드를 활용해 별도의 환전없이 해외에서 결제하고,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도 절감 ② (해외투자) 야간시간에도 실시간 거래되는 시장환율로 바로 환전하여 계획대로 투자하고, 다음날 정산 절차도 거칠 필요 없음

2 수출입 기업 : 환전비용 · 환리스크 완화

현재	ㅇ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전 비용이 발생하고, 수출계약 이후 달러가치 변화로 기업의 실질 수입이 변동
개선	ㅇ 수출대금을 원화로 계약, 수취하여 환전비용·환리스크가 감소

3 금융기관 : 국내외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금융산업 발전

현재	ㅇ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외환시장 접근성이 낮아, 주로 국내 고객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면서, 수익모델 창출에 한계
개선	ㅇ 국내 금융기관의 원화관련 영업 비교우위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고, 다양한 연계상품 개발·고도화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

4 외국인투자자 : 해외에서 영업시간대에 자유롭게 원화거래 가능

현재	① (거래시간) FOMC 기자회견(韓시간 새벽)을 보고 환전하려 하나, 외환시장이 새벽 2시에 마감됨에 따라, 환전이 불가능 ② (상대방) 평소 선진국 투자시에는 런던·뉴욕 소재 글로벌 은행과 주로 거래하나, 원화는 한국 금융기관에 별도 원화계좌를 개설해야하는 한계
개선	① (거래시간) 시간 제약없이, 24시간 원하는 시간에 원화 환전 가능 ② (상대방) 평소에 거래하는 런던·뉴욕 소재 글로벌 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하고, 원화를 차입하여,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 가능

참고 **원화 국제화 로드맵 주요 과제 추진일정**

과제명	부처 · 기관	시기
1. 역외 원화거래 인프라 구축 및 외환제도 개선		
1 외환시장 24시간 개장		
• 외환중개서비스 24시간 운영 전환	재경부·한은 금감원	’26.7월
• 야간 자동 거래를 위한 전자거래(e-FX) 가이드라인 마련 ※ 필요조치사항 : 가이드라인 배포		’26.8월
• 매매기준율 산정방식을 글로벌 기준으로 변경(MAR→TWAP)	재경부·한은	’27.1월
• 글로벌 벤치마크 환율(WMR) 편입 추진		상시
2 역외원화결제시스템 구축 ※ 필요조치사항 : 외국환거래규정,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		
• 역외원화결제기관을 이용한 외국인간 원화거래를 제한없이 허용* * 외국인간 자본거래(부동산 거래 제외) 사전신고 면제 ** 외국인의 원화계정간 거래에 대해 국내은행의 확인의무 면제	재경부·한은	’26.8월 규정개정
•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(역외원화결제망, 가칭) 신규 구축		’26.9월 시범운영 ’27년 정식시행
• 실물인도(DF)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		’26.9월
• 야간시간대 국내 외은지점의 환거래·결제업무 지원방안 검토	재경부 등	’26.下
3 외환거래 규제 완화 ※ 필요조치사항 : 외국환거래규정 개정		
• 외국인 관련 자본거래 사전신고 규제완화	재경부·한은	’26.9월
• 역외계정에 대한 자금이체 자율한도 상향		’26.下
• 외국 금융회사 명의 제3자 외환거래 허용	재경부	’26.9월
• 원화계정 구조 및 계정별 예치·처분사유를 통합·간소화	재경부·한은	’27년 방안발표
• 자본거래를 사후보고 중심 체계로 전환		

④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결제 인프라 마련		
◆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간 지급결제 제도화 ※ 필요조치사항 : 「외국환거래법」 개정	재경부·금융위	'27년
◆ 국채 토큰화 실증 시범사업 추진	재경부·한은	'27년
◆ 프로젝트 아고라 참여	한은	상시
2. 원화거래 수요 확충		
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 제고		
◆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운영	재경부·한은·금융위·금감원·예탁결제원·거래소	'26.7월
◆ CTM-예탁원 시스템 연동 또는 K-CTM 개발 추진	예탁원	'27년
◆ IRC→LEI 식별체계 전환을 위한 금융기관 인프라 정비	금융위·금감원 은행·금투업권	'26.下
◆ 코스피 全 상장사로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 확대 ※ 필요조치사항 :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	금융위·거래소	'27.3월
② 원화 자산 활용도 제고		
◆ 비거주자의 국채담보 활용지원을 위한 영문 가이드 작성 ※ 필요조치사항 : 가이드라인 배포	예탁결제원	'26.8월
◆ ICSD 내 국채·통안채 대차거래 허용 ※ 필요조치사항 : 금융투자업규정 개정	금융위 예탁결제원	'26.下
◆ 투자전용원화계정에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예치처분사유 명시 ※ 필요조치사항 : 외국환거래규정 개정	재경부	'26.下
◆ 외국중앙은행 등의 기관간 RP 시장 참여 허용 ※ 필요조치사항 : 금융투자업규정 개정	금융위·한은	'26.下
◆ 한국은행의 상임대리인 업무범위 확대 ※ 필요조치사항 : 금융투자업규정 개정	금융위·한은	'26.下

3 원화 경상거래 인센티브 확대		
◆ 무역거래 원화 결제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	재경부·산업부 수은·무보	상시
◆ 원화결제 실적 등을 수출지원사업에 우대요소 반영	재경부·산업부 등	상시
4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 확대		
◆ 주요 교역국 등과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 확대	한은·재경부	상시
◆ 국가간 QR 결제연동 확대	금융위· 금융결제원	상시
◆ 다자간 지급결제 네트워크(Project Nexus) 참여	한은·재경부	상시
3.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		
1 야간 역외 유동성 공급체계 구축		
◆ 역외 결제를 위한 원화 일시차입 제한없이 허용 ※ 필요조치사항 : 외국환거래규정,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	재경부·한은	'26.下
◆ 야간시간 원화 유동성 공급 ※ 필요조치사항 : 역외 원화결제망 고도화, 업무기준 마련 관련 규정 개정(한국은행 금융기관 대출규정, 한국은행 예금대출 취급세칙·취급절차 등)	한은·재경부	'27년
2 증권결제 원화 유동성 개선		
◆ 결제촉진대금 관련 부담 완화 방안 마련	예탁결제원	'26.下
◆ 외국계 증권사 국내법인·지점 등 차입규제 완화 방안 마련 ※ 필요조치사항 : 외국환거래규정 개정	재경부	'26.9월
3 커스터디은행 역량 강화		
◆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에 커스터디업 명시 ※ 필요조치사항 : 외국환거래법 시행령, 외국환거래규정 개정	재경부	'27년
◆ 커스터디 선도은행 지정 및 인센티브 제도 설계 ※ 필요조치사항 : 외국환거래규정 개정		
◆ 민관 합동 해외 공동 IR 등 해외 파트너십 구축 지원	재경부·한은 한국투자공사	

④ 원화 무역금융 확대		
◆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무역금융 제공	재경부·한은	상시
◆ 해외 정부 원화 구매계약시 수출금융 인센티브 제공	재경부·수은	상시
◆ 전대금융에 원화 신용 옵션 추가	재경부·수은	'26.下
4. 다층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		
① 대외안전판 확충		
◆ 외환시장 안정 여력 확충	재경부·한은	상시
◆ 공공부문의 외화유동성 공급수단 활용방안 마련		'26.下
◆ 양자간·다자간 통화스왑 확충		상시
② 외환시장 안정화정책 고도화		
◆ 24시간·역외거래환경에 맞춘 모니터링·대응체계 구축	재경부·한은	'26.7월
③ 외환건전성 관리체계 재설계		
◆ 역외 원화시장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신설 ※ 필요조치사항 : 외국환거래규정,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	재경부·한은 금융위·금감원	'27년
◆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 관리방안 마련		'26.下
◆ 역외 원화시장 유동성 안정적 시장관리 체계 구축		
④ 거시경제정책간 유기적 연계		
◆ 기관간 정보공유·공동대응 등 협업 강화	재경부·한은 금융위·금감원 등	상시